

「생활교육원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 2016. 11. 1. 개정 판 (시행 2017. 3.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4/compare?from=565&to=566>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39:5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위원장 2. 서 기: 시온관 관장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 관장, 살렘관 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2) 강제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제27조(외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제27조(외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제30조(처벌)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 퇴사(단, 보호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제30조(처벌)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원장
2. 서 기: 시온관장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1)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

(2) 강제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

제27조제3항 중 "22:00까지로"를 "23:00까지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처벌)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
-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